

I. 검토배경

對內外的 여건변화로 石油產業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

석유산업의 자율화 문제

—동력자원부—

-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및 경제구조의 다원화에 따른 정부 규제 위주정책의 비효율성 증대
 - 石油危機管理를 위한 정부 규제가 장기화됨으로써 石油產業의 자율적 대응능력을 저해
 - 경제규모의 확대로 자율화에 따른 충격 및 副作用의 자체 흡수 가능

	1978	1987
수출액(億달러)	127	473
原油수입(億달러)	22	38

- 안정성 토대 위에서 능률을 제고하는 정책자세 전환
 - 80년대 중반이후 國際原油價 인정 및 원貨 가치 상승으로 국내 油價 불안요인 감소
 - 그동안의 石油의존도 감축 및 原油비축능력 향상으로 안정공급능력제고

	1978	1987
石油의존도(%)	63.3	44.0
정부石油備蓄(지속일수)	-	51

- 石油產業의 국제경쟁력 확보
 - 정제능력의 증가(1978년 58만 BPSD → 1987년 79만 BPSD)
 - 貨加工을 통한 수출등 石油產業의 국제화 추세
 - 해외 油田개발사업등 石油產業의 다각화

II. 현행 석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

1. 현행제도의 긍정적인 측면

- 獨寡占市場 구조하에서 不當價格策定 방지에 기여

- 가격 조정폭 및 시기 조정으로 효율적 물가 관리 가능
- 특정 油種의 低價유지로 산업정책 및 민생안정대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(나프타가격 및 燈·輕油의 低價유지)
- 石油안정공급을 위주로 한 소비자 정체주의 정책기조 유지가 가능

2. 현행제도의 장기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

- 민간기업의 損益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
 - 精油社는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고 정부에 의존하며, 자체 비용절감 노력 미흡
 -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(稅後 10%)의 가격계상으로 자기자본확대 및 과잉시설 투자 유발
- 가격결정시 정책의지를 반영함으로써 油種間 가격구조의 왜곡 초래
 - 民生 및 산업용 石油製品(燈·輕油)의 低價유지를 위해 휘발유 및 LPG의 高價유지 불가피
 - 부분적 과대 시설투자 유발 → 資源의 효율적인 배분 저해
- 유통단계별 가격책정 및 유통부문 참여제한으로 유통 과정에서의 경쟁원리 실현의 여지가 축소
 - 精油社가 시장확보를 위하여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그 이익을 향유

III. 석유산업 자율화 유지방안

1. 기본방향

- 정부의 직접규제를 시장 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
- 현실적 제약요인을 고려 점진적·단계적 자율화 추진
- 국제 石油波動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정부 통제기능은 유보
- 자율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해 보완대책 수립

2. 분야별 自律化 추진방안

가. 油價管理制度

1) 제도개선방안

	1 단계	2 단계	3 단계
주	○換率連動制 (국내油價를 환율에 연동)	국제油價連動制 (국내石油製品가격을 국제石油製品가격 또는原油價에 연동)	
요	○국내油價구조의 개편		油價자율화
내			
용			

* 급격한 全面 自律化 불가 사유

- 國際油價 급변시 물가불안요인 가중
- 공급구조의 과점화로 불합리한 가격양동 가능
- 精油產業의 독점화 및 垂直系列化 현상 야기

2) 自律化 선행 필요조치

- 국내油價구조의 국제가격구조로의 접근 추진(稅前工場渡 기준)
- 특별소비세율조정등 石油關聯 세제개편 추진

나. 石油產業 관리제도

1) 제도개선방안

- 精油業
 - 점진적으로 신규 참여 제한 요인 제거
 - (1단계) 시설개조허가제 폐지
 - (2단계) 증설허가제 폐지(국내油價의 국제수준 유지 전제)
 - (3단계) 신규참여 자유화

○ 石油流通業

- Pole sign 制 도입
 - 대리점 및 주유소 허가기준 설정 권한의 地方自治團體 위임
 - 유통부문 참여제한의 점진적 완화

3. 石油 輸出入 制度

1) 제도개선방안

	1 단계	2 단계	3 단계
주	○貨加工原油 및 現物原油도입 승인제 폐지	○輸出推薦制 폐지	○輸入推薦制 폐지
요	○분기별 수입계획 및 신고제 폐지	○原油도입 승인제 폐지	
내			
용			

2) 自律化추진 先行필요조치

- 수출입 자유화 정도에 따른 정부 비축량 증대 조치
 - 민간부문은 자율화와 함께 低價導入 추진, 정부는 비축량 조정을 통해 비상시 수급대책 확보
- 輸出入 자유화에 따라 저장시설, 일정량의 재고, 품질유지설비 등의 자격요건 부여
- Hit & Run式 수입공급시 石油의 聯產性으로 국내石油供給體制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요건 부여필요(日本式)

- 消費地 精製主義 보완 수정

IV. 향후 추진방향

- 분야별 推進方案 수립
- 公聽會를 통한 여론 收斂
- 관계부처 협의
- 관련법령 改正 추진

석유산업의 자율화

